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의료기관용]

2023. 6.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차례 CONTENTS

제1장 사업 개요	1
1. 추진배경 및 목적	1
2. 관련 근거	1
3. 사업 주요내용	2
4. 추진체계 및 역할	4
제2장 사업 세부내용	6
1. 시범사업 개념 및 모형	6
2. 서비스 절차 등	8
제3장 요양급여비용 산정	11
1. 요양급여 기준	11
2. 산정지침	12
3. 급여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14
제4장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15
1. 청구원칙	15
2. 명세서 작성요령	16
3. 보완 및 추가청구	19
제5장 시범의료기관 준수사항	20
1. 일반 준수사항	20
2. 수가 등 관련 준수사항 및 제재조치	24
[별첨1] 시범사업 관련 질의응답	26
[별첨2] 섬·벽지 지역	41
[별첨3]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목록	53

시행 2023.6.1.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의료기관용]

제1장 사업 개요

제2장 사업 세부내용

제3장 요양급여비용 산정

제4장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제5장 시범의료기관 준수사항

사업 개요

1. 추진배경 및 목적

- 가.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 의료기관 방문이 제한되는 상황에서도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통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속적인 국민 건강 증진 및 의료접근성 제고에 기여함
- 나. 비대면진료를 도입하여 감염병 위기 단계 하향 후에도 의료기관 직접 방문이 어려우나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관련 근거

- 가.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 (보건의료 시범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나. (국정과제)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67번)

3. 사업 주요내용

가. 사업 내용

-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이하 '의사'라 함)가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진찰 및 처방 등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나. 사업 대상

1) 대상 기관

-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의원급, 병원급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원 (이하 '시범의료기관'이라 함)과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이하 '시범약국'이라 함)
 -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 「지역보건법」 제12조에 따른 보건의료원
 -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 「약사법」 제91조에 따른 한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

2) 대상 보건의료인

- 시범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시범약국에 소속된 약사

3) 대상 환자

대상		적용대상	
의원급 의료기관	재진 원칙	대면진료 경험자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진료한 경험 (만성질환자 1년 이내, 그 외 환자 30일 이내) 이 있는 재진 환자 ※ 소아 환자(만 18세 미만)도 대면진료 이후의 비대면진료(재진)를 원칙으로 하나, 휴일·야간 시간대에 한해 대면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비대면진료를 통한 의학적 상담은 가능(처방 불가) * (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야간)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익일 09시
		섬·벽지 환자	섬·벽지 지역(보험료 경감고시) 거주자
	초진도 허용	거동불편자	▶ 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자에 한함) ▶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감염병예방법 상 1급 또는 2급 감염병으로 확진되어 격리 (권고 포함) 중에 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 한 환자
병원급 의료기관	희귀질환자		해당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진료 (1년 이내)를 받은 환자로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에 해당하는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적용자
	수술·치료 후 관리가 필요한 환자		해당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진료 (30일 이내)를 받은 환자로서,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 가 필요한 환자 *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검사결과의 설명에 한함

다. 사업 기간

- 2023.6.1.부터 시행

4. 추진체계 및 역할

가. 수행 주체별 역할

1) 보건복지부

- 시범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 결정 등 시범사업 추진 총괄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 이라 한다)

- 시범사업 수가 및 급여기준 개발
- 요양급여비용 접수·청구, 비대면진료비 청구자료 통계 및 분석
- DUR 점검 및 분석

3) 시범기관(시범의료기관, 시범약국)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서비스 안내 및 제공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비용 청구 등

4)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

- 요양급여비용 지급
- 대상환자 자격 확인

5) 한국보건의료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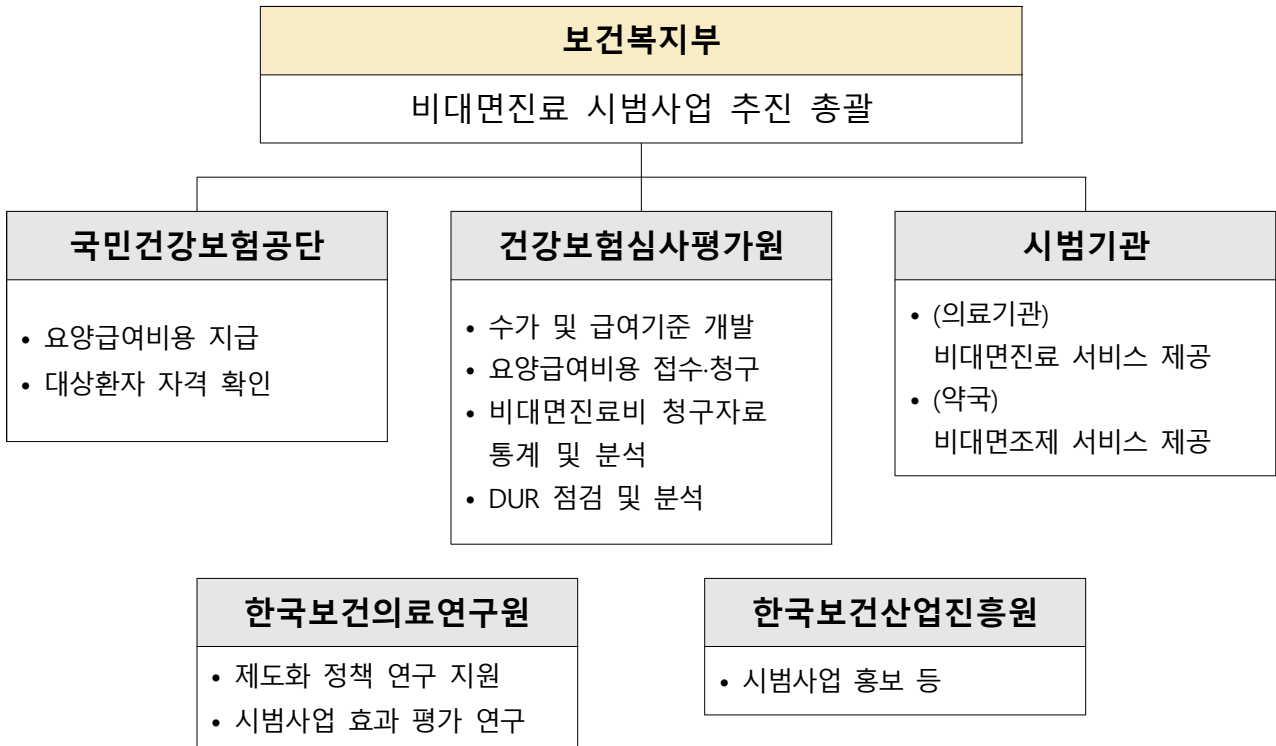
- 쟁점 및 해외사례 검토 등 제도화 정책 연구 지원
- 시범사업 효과 평가 연구 등

6)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시범사업 홍보, 대국민 만족도 점검 등

나. 추진 체계도

1) 시범사업 운영체계



2) 시범사업 운영관리

- 필요 시 시범사업 운영방안, 진행경과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심사평가원, 공단, 관련 학회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운영

사업 세부내용

1. 시범사업 개념 및 모형

- 가. (비대면진료 서비스) 요양기관 방문이 어려우나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시범의료기관의 의사가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진찰 및 처방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
- 나. (대상환자) 감염병 확산 우려 또는 의료기관 방문 어려움 등으로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환자 중 시범의료기관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를 실시하여도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

1)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환자

- (대면진료 경험자)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하여 진료한 경험(만성질환자 1년 이내, 그 외 환자 30일 이내)이 있는 재진 환자
- 소아 환자(만 18세 미만)도 대면진료 이후의 비대면진료(재진)를 원칙으로 하되, 휴일·야간*에 한해 대면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비대면진료를 통한 의학적 상담은 가능
- (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야간)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익일 09시

- (섬·벽지 환자) 「보험료 경감 고시」 별표1에 규정된 섬·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초진 가능)
- (거동불편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초진 가능)
- (감염병 확진 환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에 따른 제1급 또는 제2급 감염병 확진 환자 중 격리(권고 포함) 중인 환자(초진 가능)

2) 병원급 의료기관 대상환자

- (희귀질환자) 해당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1년 이내)이 있는 재진 환자 중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별표4에 따른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자
-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 필요 환자) 해당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30일 이내)이 있는 재진 환자 중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검사 결과의 설명에 한함)

2. 서비스 절차 등

가. 서비스 절차

대상환자 진료 요청		비대면진료 서비스 제공		
대상 환자	사전 문진	비대면진료 실시	처방전 발급	비대면 조제·전달
만성질환자, 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등	비대면진료 대상 해당여부 확인	진료실 내에서 시행 화상·음성 전화 이용	의사가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처방전 발급 마약류 및 오·남용 의약품 처방 불가	조제 가능여부 및 수령방식 등 협의 복약지도(구두+서면) 의약품 전달
		비대면진료 불가	처방전 전송	
		검사·처치 필요한 경우 및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대면진료 권고	환자가 지정한 약국으로 처방전 전송 (이메일, 팩스 등 이용)	

나. 서비스 상세내용

1) (비대면진료 요청) 비대면진료를 희망하는 환자는 시범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 요청

- 시범의료기관의 의사는 환자가 비대면진료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비대면진료 실시 불가
- (예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전화를 걸어 건강상태 확인 또는 검사 결과 설명 후 비대면진료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등

2) (사전 문진) 시범의료기관에서는 환자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비대면진료의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확인

- 환자는 시범의료기관에 증상, 건강상태 등을 포함하여 비대면진료 대상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제공
- (예시) 증상, 건강상태, 진료 희망사항 및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 유형(소아,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정보

3) (비대면진료 실시) 시범의료기관의 의사는 환자를 대상으로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진단 및 처방 등 비대면진료 실시

○ 시범의료기관의 의사는 환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비대면진료가 안전하지 않거나 검사·처치 등 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내원 권고

• (예시) 청진, 촉진, 대면 검사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환자의 건강상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증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등

○ 비대면진료 시 화상통신·전화 등을 활용하여야 하며, 단순 문자 메시지나 메신저만 이용한 비대면진료는 불가

- 화상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화상진료가 불가능한 경우(스마트폰이 없거나 활용 불가 등) 등은 예외적으로 음성전화를 통한 진료 허용

○ 본인확인, 진료내용 기록 등은 대면진료 절차 준용

○ 적절한 진료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범의료기관 내에서 비대면진료 실시

4) (본인부담금 수납) 환자 본인부담금 수납은 의료기관(약국)과 환자가 협의하여 결정

5) (처방전 발급) 비대면진료 실시 결과, 의사가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처방전 발급 가능

○ 비대면진료를 통해 약제를 처방하는 경우에도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은 처방 불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제21조제2항에 따라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수입·제조허가를 받은 의약품

**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23개 성분

- 비대면진료를 통해 약제를 처방하는 경우 1회 처방 시 최대 90일 한도 내에서 처방 가능

6) (처방전 전송) 의사는 환자와 협의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 등 처방전 전송 방식 결정

- 의사는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처방전 전송
- 의사는 약국에서 투약 관련 사항 확인 및 복약지도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범의료기관의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환자의 전화번호 등 기재

* 중복 조제, DUR 관련 사항 등 확인, 환자 대상 복약 관련 사항 안내 등

7) (처방약 조제, 복약지도 및 수령) 약사는 환자와 협의하여 조제 가능 여부, 의약품 수령 방식 결정

- 사전 상담을 통해 처방약 조제가능 여부(대체조제 가능 여부 포함), 수령방식 등을 환자와 사전협의
 - 수령 방식은 본인 수령, 대리 수령, 재택 수령 등으로 결정하되, 재택 수령 방식은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함
- 협의된 내용에 따라 조제를 실시하고 환자에게 구두와 서면으로 복약지도를 한 후, 환자에게 의약품 전달
- 조제기록부에 비대면조제 여부, 의약품 수령 방식 등을 기재

요양급여비용 산정

1. 요양급여 기준

가. 요양급여의 대상

1) 급여의 담당

-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범의료기관

2) 급여의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 중 비대면진료를 요청한 환자로 의사에게 비대면진료의 필요성 및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환자

나. 요양급여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별표1)에 따르며, 요양급여의 범위는 동 규칙 제9조제1항에 의한 '비급여 대상'(별표2)을 제외한 일체의 것으로 한다.

다. 급여의 비용부담

- 건강보험의 부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 의료급여의 부담은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2. 산정지침

가. 시범의료기관의 의사가 대상환자에게 비대면진료를 한 경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제1장의 ‘가-1 외래환자 진찰료’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를 산정한다.

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는 비대면진료를 개시한 시각을 기준으로 구분·산정한다.

(1) 주간 : 평일 09시~18시, 토요일 09시~13시

(2) 야간 :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20시, 익일 07시~09시

(3) 심야 : 평일 및 토요일 20시~익일 07시

(4) 공휴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다. 비대면진료 후 ‘가-1 외래환자 진찰료’ 및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산정 시 종별 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라. 비대면진료 후 '가-1 외래환자 진찰료' 및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산정 시 소아·공휴·야간 등 각종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는 비대면진료 후 산정된 '가-1 외래환자 진찰료' 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한다.
- 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는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환자를 대상으로 월 2회를 초과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 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는 '가-22 의료질평가지원금' 또는 '가-24-1 전문병원 의료질평가 지원금'과 동시 산정하지 아니한다.

3. 급여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23년 점수당 단가: 의과 의원 92.1원, 의과 병원 79.7원, 보건의료원 91.0원
치과 의원·병원 93.0원, 한의원·한방병원 95.4원)

분류 번호	코드	분류	점수 (점)	금액(원)		
				의원	병원	보건 의료원
비대면 진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주 : 야간 ²⁾ , 심야 ³⁾ , 공휴 ⁴⁾ 에 비대면 진료를 실시한 경우에도 소정 점수를 산정할 수 있다.				
	IC001 ~IC004	가. 의과	40.34	3,720	3,220	3,670
	IC011 ~IC014	나. 치과	33.14	3,080	3,080	3,020
	91001 ~91004	다. 한의과	28.79	2,750	2,750	2,620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이며, 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의함

1. 청구원칙

- 가.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자료제출 매체의 선택) 시범의료기관은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매체 중 한가지의 방법을 선택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다.
- 나. (청구시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수가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가능 시기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한다.
- 다. (심사청구서) 시범사업내역(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내역)과 비시범사업 내역(다른 진료내역)의 심사청구서는 구분 없이 하나의 심사청구서로 작성한다.
- 라. (명세서의 구분 및 작성방법) 동일 수진자에 대해 시범사업 내역(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내역)과 비시범사업 내역(다른 진료내역)은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로 작성한다.

2. 명세서 작성요령

가. 의료기관 명세서 작성요령

1) 명세서 일반내역

- (요양급여비용총액) 비대면진료와 관련된 '진찰료'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의 금액은 '요양급여비용총액1'에 합하여 기재한다.

2) 명세서 상병내역

- (내원일자) 비대면진료를 실시한 일자를 기재한다.

3) 명세서 진료내역

- (항목번호)
 - (진찰료) '01항 01목 초진' 또는 '01항 02목 재진'란에 기재한다.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01항 03목 응급 및 회송료 등'란에 기재한다.
- (면허종류 및 번호) 외래환자진찰료의 면허 종류, 면허 번호란에 실제 환자를 진료한 의사의 면허 종류와 면허 번호를 기재한다.

4) 명세서 특정내역

-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의 해당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JX999(기타내역)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대상환자 유형을 기재한다.
 - 타 JX999(기타내역)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여 기재하고, 반드시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기재한다.

대상환자 유형	기재내용
심·벽지 거주자	비대면/A
등록 장애인	비대면/B
감염병 확진 환자	비대면/C

- (처방내역단위 특정내역)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전 발행 시 처방내역단위 특정내역 CT003(비대면처방)에 'Y'를 기재한다.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CT003	비대면 처방	X(1)	시범의료기관의 의사가 대상환자에게 비대면진료 후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 'Y'를 기재

나.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작성요령

항목	세부작성요령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p>□ (예시1) 의원에서 주간에 만성질환자에게 비대면진료를 시행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면 진찰(재진)을 시행한 경우 '외래환자 진찰료'는 01항 02목에 기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는 01항 03목에 기재 - 해당 진찰료의 면허종류 및 면허번호란에 실제 비대면진료를 시행한 의사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 기재 - '가-14 만성질환 관리료' 해당 질환이 주상병일 경우만 비대면진료 가능 <p><상병내역></p> <table border="1"> <thead> <tr> <th>상병일련번호</th> <th>상병분류구분</th> <th>상병기호</th> <th>상병명</th> </tr> </thead> <tbody> <tr> <td>1</td> <td>1</td> <td>I109</td> <td>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td> </tr> </tbody> </table> <p><진료내역></p> <table border="1"> <thead> <tr> <th>항</th> <th>목</th> <th>줄 번호</th> <th>코드 구분</th> <th>코드</th> <th>단가</th> <th>일투</th> <th>총투</th> <th>금액</th> <th>면허 종류</th> <th>면허 번호</th> </tr> </thead> <tbody> <tr> <td>01</td> <td>02</td> <td>0001</td> <td>1</td> <td>AA254</td> <td>12,380</td> <td>1</td> <td>1</td> <td>12,380</td> <td>1</td> <td>12345</td> </tr> <tr> <td>01</td> <td>03</td> <td>0002</td> <td>1</td> <td>IC001</td> <td>3,720</td> <td>1</td> <td>1</td> <td>3,720</td> <td>-</td> <td>-</td> </tr> </tbody> </table>	상병일련번호	상병분류구분	상병기호	상병명	1	1	I109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항	목	줄 번호	코드 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면허 종류	면허 번호	01	02	0001	1	AA254	12,380	1	1	12,380	1	12345	01	03	0002	1	IC001	3,720	1	1	3,720	-	-
상병일련번호	상병분류구분	상병기호	상병명																																							
1	1	I109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항	목	줄 번호	코드 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면허 종류	면허 번호																																
01	02	0001	1	AA254	12,380	1	1	12,380	1	12345																																
01	03	0002	1	IC001	3,720	1	1	3,720	-	-																																

항목	세부작성요령																																																														
<p>□ (예시2) 의원에서 평일 19시에 기타질환자에게 비대면진료를 시행한 경우 - 19시에 진료 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의원-야간' 수가 청구</p> <p style="text-align: center;"><진료내역></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항</th> <th>목</th> <th>줄 번호</th> <th>코드 구분</th> <th>코드</th> <th>단가</th> <th>일투</th> <th>총투</th> <th>금액</th> <th>면허 종류</th> <th>면허 번호</th> </tr> </thead> <tbody> <tr> <td>01</td> <td>02</td> <td>0001</td> <td>1</td> <td>AA254</td> <td>12,380</td> <td>1</td> <td>1</td> <td>12,380</td> <td>1</td> <td>12345</td> </tr> <tr> <td>01</td> <td>03</td> <td>0002</td> <td>1</td> <td>IC002</td> <td>3,720</td> <td>1</td> <td>1</td> <td>3,720</td> <td>-</td> <td>-</td> </tr> </tbody> </table>											항	목	줄 번호	코드 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면허 종류	면허 번호	01	02	0001	1	AA254	12,380	1	1	12,380	1	12345	01	03	0002	1	IC002	3,720	1	1	3,720	-	-																				
항	목	줄 번호	코드 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면허 종류	면허 번호																																																					
01	02	0001	1	AA254	12,380	1	1	12,380	1	12345																																																					
01	03	0002	1	IC002	3,720	1	1	3,720	-	-																																																					
<p>□ (예시3) 의원에서 공휴일에 섬벽지 거주자에게 비대면진료를 시행한 경우 - 공휴일에 진료 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의원-공휴' 수가 청구 - 대상환자가 섬·벽지 거주자인 경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의 해당 출번호단위 특정내역 JX999에 '비대면/A' 기재</p> <p style="text-align: center;"><진료내역></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항</th> <th>목</th> <th>줄 번호</th> <th>코드 구분</th> <th>코드</th> <th>단가</th> <th>일투</th> <th>총투</th> <th>금액</th> <th>면허 종류</th> <th>면허 번호</th> </tr> </thead> <tbody> <tr> <td>01</td> <td>01</td> <td>0001</td> <td>1</td> <td>AA154</td> <td>17,320</td> <td>1</td> <td>1</td> <td>17,320</td> <td>1</td> <td>12345</td> </tr> <tr> <td>01</td> <td>03</td> <td>0002</td> <td>1</td> <td>IC004</td> <td>3,720</td> <td>1</td> <td>1</td> <td>3,720</td> <td>-</td> <td>-</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특정내역기재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발생단위구분</th> <th>출번호</th> <th>특정내역코드</th> <th>특정내역세부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 style="text-align: center;">0002</td> <td style="text-align: center;">JX999</td> <td style="text-align: center;">비 대 면 / A</td> </tr> </tbody> </table>											항	목	줄 번호	코드 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면허 종류	면허 번호	01	01	0001	1	AA154	17,320	1	1	17,320	1	12345	01	03	0002	1	IC004	3,720	1	1	3,720	-	-	발생단위구분	출번호	특정내역코드	특정내역세부내용	2	0002	JX999	비 대 면 / A												
항	목	줄 번호	코드 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면허 종류	면허 번호																																																					
01	01	0001	1	AA154	17,320	1	1	17,320	1	12345																																																					
01	03	0002	1	IC004	3,720	1	1	3,720	-	-																																																					
발생단위구분	출번호	특정내역코드	특정내역세부내용																																																												
2	0002	JX999	비 대 면 / A																																																												
<p>□ (예시4) 병원에서 주간에 희귀질환자에게 비대면진료 후 원외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 비대면진료 후 발행된 처방전에는 처방내역단위 특정내역 CT003에 'Y' 기재</p> <p style="text-align: center;"><진료내역></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항</th> <th>목</th> <th>줄 번호</th> <th>코드 구분</th> <th>코드</th> <th>단가</th> <th>일투</th> <th>총투</th> <th>금액</th> <th>면허 종류</th> <th>면허 번호</th> </tr> </thead> <tbody> <tr> <td>01</td> <td>02</td> <td>0001</td> <td>1</td> <td>AA255</td> <td>12,060</td> <td>1</td> <td>1</td> <td>12,060</td> <td>1</td> <td>12345</td> </tr> <tr> <td>01</td> <td>03</td> <td>0002</td> <td>1</td> <td>IC001</td> <td>3,220</td> <td>1</td> <td>1</td> <td>3,220</td> <td>-</td> <td>-</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처방내역></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처방전발급번호</th> <th>코드 구분</th> <th>코드</th> <th>1회 투약량</th> <th>일투</th> <th>총투</th> </tr> </thead> <tbody> <tr> <td>2023060100001</td>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 style="text-align: center;">650000001</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7</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특정내역기재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발생단위구분</th> <th>처방전발급번호</th> <th>특정내역구분</th> <th>특정내역</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d style="text-align: center;">2023060100001</td> <td style="text-align: center;">CT003</td> <td style="text-align: center;">Y</td> </tr> </tbody> </table>											항	목	줄 번호	코드 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면허 종류	면허 번호	01	02	0001	1	AA255	12,060	1	1	12,060	1	12345	01	03	0002	1	IC001	3,220	1	1	3,220	-	-	처방전발급번호	코드 구분	코드	1회 투약량	일투	총투	2023060100001	3	650000001	1	1	7	발생단위구분	처방전발급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4	2023060100001	CT003	Y
항	목	줄 번호	코드 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면허 종류	면허 번호																																																					
01	02	0001	1	AA255	12,060	1	1	12,060	1	12345																																																					
01	03	0002	1	IC001	3,220	1	1	3,220	-	-																																																					
처방전발급번호	코드 구분	코드	1회 투약량	일투	총투																																																										
2023060100001	3	650000001	1	1	7																																																										
발생단위구분	처방전발급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4	2023060100001	CT003	Y																																																												

3. 보완 및 추가청구

가. 보완청구

-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으나, 심사평가원에서 심사불능 처리된 건에 대해 해당 사유를 보완하여 보완청구한다.

나. 추가청구

- 요양급여비용을 지급 받은 명세서 중 진료내역의 일부가 당초 청구 시 누락된 경우에는 누락된 진료내역만을 추가로 청구한다.

다. 기타

- 보완 및 추가청구 시 기재하는 구분코드 등 청구방법은 「요양급여 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을 따른다.

시범의료기관 준수사항

1. 일반 준수사항

가. 본인확인 의무

- 시범의료기관은 환자의 본인여부 및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허용 대상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진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 확인결과와 진료 실시 내용은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 대상환자 여부 확인방법 >

의료기관	대상환자		기준	확인방법
의원급 의료기관	재진 원칙	대면 진료 경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성질환자)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년 이내에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 ▸ (그 외 환자)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30일 이내에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 ▸ (소아 환자) 대면진료 이후의 비대면진료 (재진)를 원칙으로 하되 휴일야간에 한해 대면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만 18세 미만 소아 환자의 경우 비대면진료를 통한 의학적 상담은 가능(처방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가 해당 의료기관에 재진임을 알림 → 의료기관은 환자 의무 기록 확인
		초진 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료 경감 고시」 별표1에 규정된 섬·벽지 지역(별첨2)에 거주하는 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여부 확인(아래의 방법 중 선택) 후 의료기관에 고지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환자의 주소지 섬·벽지 지역 해당 여부 확인 ② 건강보험료 고지서 내 '섬·벽지 경감대상' 확인 ③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문의

		거동 불편자 ▶ (노인) 만 65세 이상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환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인 환자	▶ 의료기관에 장기요양등급 인정서 등 제시 ▶ 의료기관에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증명서 등 제시
		감염병 확진 환자 ▶ 감염병예방법 상 1급 또는 2급 감염병 으로 확진 되어 격리(권고 포함) 중 에 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환자	▶ 격리통지서, 문자 등 격리 사실 통보내용 제시
병원급 의료기관	희귀질환자	▶ 해당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 진료 (1년 이내)를 받은 「본인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에 해당하는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적용자	▶ 의료기관은 환자 의무기록 확인 ▶ 환자의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여부 확인
	수술치료 후 관리가 필요한 환자	▶ 해당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 진료 (30일 이내)를 받은 환자로서, ▶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 가 필요한 환자 * 신체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검사결과의 설명에 한함	▶ 의료기관은 환자 의무기록 확인

- 의사는 환자가 의사의 자격여부 확인을 위해 면허정보 등을 요청할 경우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본인확인 방법은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여 환자와 의료기관의 여건에 따라 적합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p>< 본인 확인 방법(예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을 활용하여 화상 전화를 통해 얼굴과 대조 (재진의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확인으로 대체 가능) ▶ 진료 전 신분확인 가능서류를 의료기관에 팩스, 이메일, 보호자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 ▶ 의사의 사진이 포함된 면허증, 사원증 등을 활용하여 화상 전화를 통해 얼굴과 대조

나. 부적절한 비대면진료 행위 금지

-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 원칙의 예외를 허용한 것으로 진료환경은 대면진료와 동일하나, 진료방식만 비대면으로 실시한다.
- 의사가 비대면진료를 실시하였으나 진단을 위해 환자를 대면하여 진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내원을 권유하여야 한다.
- 의료법 상 허가·신고된 의료기관 내 진료실에서 비대면진료에 적합한 진료환경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 화상진료를 원칙으로 하며, 환자가 식별 가능한 수준의 진료환경 (통신 속도, 진료실 내 조도 등) 등을 갖추고 진료하여야 한다.

< 부적절한 비대면진료 사례 예시 >

- 의료기관 밖(재택, 차량, 실외 등)에서 진료하는 행위(의료법 제33조제1항 위반)
- 진찰 없이 환자의 요청에 의해 전문의약품 등을 처방하는 행위(의료법 제17조의2 위반)
- 화상·음성통신 없이 문자메세지, 메신저만으로 처방하는 행위(지침 위반으로 의료법 제33조제1항 위반에 해당)
- 의사가 아닌 자가 비대면진료를 실시하거나 처방하는 행위(의료법 제27조제1항 위반)

다. 비대면진료 관련 전담 기관 운영 금지

- 시범의료기관은 대면진료를 하지 않고 비대면진료만 실시해서는 아니된다. (정당한 사유없이 대면진료 거부 시 의료법 제15조 위반)
- 시범의료기관은 해당 의료기관 내 진료건수 중 월 비대면진료 건수의 비율이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특정 의약품 처방 금지(별첨3)

- 비대면진료 후 처방이 필요한 경우라도 마약류*, 오·남용 의약품** 등을 처방할 수 없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제21조제2항에 따라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수입·제조허가를 받은 의약품

**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지정 품목(23개 품목 (성분) 함유제제)

- 비대면진료 후 처방이 필요한 경우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중복처방, 병용금지 성분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고 처방하여야 한다.

* 「의료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확인 등

마. 플랫폼 가이드라인 준수 관련 협조사항

- 시범의료기관이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해당 플랫폼 업체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환자 본인 여부 확인 가능여부, 환자가 시범의료기관 선택 가능한지 여부, 시범의료기관 관련 정보 제공의 적절성 등

2. 수가 등 관련 준수사항 및 제재조치

가. 요양급여 안내

- 시범의료기관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환자 및 보호자에게 시범사업 및 요양급여 내용에 대하여 적절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 시범의료기관은 당해 기관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과 시범사업 대상 및 수가, 환자 본인부담 내역 등 주요사항을 환자 또는 보호자가 보기에 쉬운 장소(의료기관 입구, 진료비 수납창구, 온라인 매체 등)에 적절한 방법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나. 자료제출의 의무

- 시범의료기관은 위탁연구, 모니터링, 사업평가 등을 위한 자료 요청 시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연구과제 참여 협조 의무

- 시범의료기관은 시범사업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참여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에게 연구진으로 연구 참여를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라. 법령 준수 의무

- 시범의료기관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참여 과정에서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마. 개인정보 보호 의무

- 시범의료기관은 시범사업 참여 과정에서 알게 된 환자의 개인정보, 건강 및 질병정보 등을 보호할 책임을 지닌다.
-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시범의료기관은 개인정보를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보안을 갖춘 시스템과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바. 제재조치 등

- 시범의료기관은 시범사업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적절한 시범사업 참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범사업 참여를 제한받을 수 있다.
- 시범사업 운영지침 등에서 정하는 급여 기준을 위반하여 착오, 허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관련 수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를 공단에 반환하여야 한다.
- 공단 및 심사평가원은 위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등을 시범의료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범의료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련 수가 등 지급을 유예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첨1

시범사업 관련 질의응답

1.

시범의료기관 관련

Q1

시범사업 참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별도의 신청 및 지정 단계가 없는 시범사업으로, 비대면진료 시행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Q2

대상기관에 보건소는 포함되나요?

- 지역보건법 제31조(「의료법」에 대한 특례)에 따른 보건소·보건지소 및 「농어촌 등 보건의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는 시범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

비대면진료는 의료기관 내에서만 시행해야 하나요?

- 비대면진료는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가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 **의료법 33조(개설 등)** ①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2. 대상환자 관련

Q4 시범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환자의 동의는 어떻게 받나요?

-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요청할 경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환자가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할 경우 진료 기록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합니다.

▶ (예시) 대면진료에 비해 본인부담금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에 대한 사항 등

Q5 시범사업 대상환자는 누구이며 어떻게 확인하나요? 대상환자가 아니면 비대면진료를 할 수 없나요?

- 대상환자의 기준과 확인방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본 시범사업은 대상환자를 제한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대상환자가 아닌 경우 비대면 진료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 대상환자 여부 확인방법 >

의료기관	대상환자	기준	확인방법
의원급 의료기관	재진 원칙 대면 진료 경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성질환자)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년 이내에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가 해당 의료기관에 재진 임을 알림 → 의료기관은 환자 의무 기록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외 환자)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30일 이내에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아 환자) 대면진료 이후의 비대면진료 (재진)를 원칙으로 하되 휴일야간에 한해 대면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만 18세 미만 소아 환자의 경우 비대면진료를 통한 의학적 상담은 가능(처방 불가) <p>* (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야간)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익일 09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관은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상 연령, 진료시간 확인

초진도 허용	섬·벽지 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료 경감 고시」 별표1에 규정된 섬·벽지 지역(별첨2)에 거주하는 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여부 확인(아래의 방법 중 선택) 후 의료기관에 고지 <ol style="list-style-type: none"> 환자의 주소지 섬·벽지 지역 해당 여부 확인 건강보험료 고지서 내 '섬·벽지 경감대상'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문의
	거동 불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 만 65세 이상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기관에 장기요양등급 인정서 등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인 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기관에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증명서 등 제시
감염병 확진 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염병예방법 상 1급 또는 2급 감염병으로 확진되어 격리(권고 포함) 중에 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격리통지서, 문자 등 격리 사실 통보내용 제시 	
병원급 의료기관	희귀질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 진료(1년 이내)를 받은 「본인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에 해당하는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적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기관은 환자 의무기록 확인 환자의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여부 확인
	수술치료 후 관리가 필요한 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진료(30일 이내)를 받은 환자로서,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p>*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검사 결과의 설명에 한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기관은 환자 의무기록 확인

Q6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중 만성질환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중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14 만성질환관리료’의 주2.의 질병코드를 주상병으로 하는 환자입니다.

▶ **가-14 만성질환관리료 주2. 관련 상병**

고혈압: I10~I13, I15, 당뇨병: E10~E14, 정신 및 행동장애: F00~F99, G40~G41, 호흡기결핵: A15~A16, A19, 심장질환: I05~I09, I20~I27, I30~I52, 대뇌혈관질환: I60~I69, 신경계 질환: G00~G37, G43~G83, 악성 신생물: C00~C97, D00~D09, 갑상선의 장애: E00~E07, 간의 질환: B18, B19, K70~K77, 만성신부전증: N18

Q7

섬·벽지 지역은 어디를 의미하나요?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16호 「보험료 경감고시」(‘23.1.1. 시행)의 제3조제1항에 따라 별표1에 규정된 지역을 의미합니다.
- ▶ **보험료 경감고시 제3조(섬·벽지지역 경감)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별표1의 섬·벽지지역에 거주하는 가입자(제5조3항에 따라 경감을 받는 가입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세대별 또는 가입자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Q8

소아 환자는 공휴일 또는 야간시간 외에는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없나요?

-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진료를 받았던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 대면진료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또는 평일 18시(토요일 13시)~익일 09시에만 비대면 진료를 통한 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Q9

희귀 질환자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해당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1년 이내)이 있는 환자 중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별표4에 따른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자를 말합니다.
-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한 비대면진료가 가능합니다.

Q10

해당 의료기관 경험이 없거나, 대면 진료 후 30일이 지난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요청할 경우 초진 비대면진료를 시행할 수 있나요?

-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고자 하는 환자 중 심·벽지 거주자, 거동불편자(65세 이상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격리(권고 포함)기간 중)는 예외적으로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 소아 환자는 대면진료 이후의 비대면진료(재진)를 원칙으로 하되, 휴일 또는 야간에 한해 대면 진료기록이 없더라도 비대면진료를 통한 의학적 상담이 가능합니다.

Q11

6개월 전 만성질환으로 대면진료를 받았던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요청할 경우 시행할 수 있나요?

- 만성질환자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1년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경우 해당 질환에 대해 비대면진료가 가능합니다.
- 만성질환 이외의 질환자의 경우 30일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Q12

타 기관에서 만성질환으로 대면진료를 받아오던 환자가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우리 요양기관에서 비대면진료 초진이 가능한가요?

- 만성질환으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1년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경우라면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나, 해당 의료기관에서 초진인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 진단서, 의뢰서 등의 서류가 있다 하더라도, 해당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 경험이 없다면 최초 1회 대면진료를 실시한 후에 가능합니다.

Q13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감염병 확진 환자는 어떤 감염병으로 확진된 환자를 의미하나요?

- 감염병예방법 상 제1급, 제2급 감염병으로 확진된 자를 의미합니다.
 - ▶ **(1급 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 ▶ **(2급 감염병)**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코로나19, 풍진,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감염증, 한센병, 성홍열,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E형간염, 었폭스

Q14

감염병 의심 증상이 있는데 비대면진료가 가능한가요?

- 감염병 확진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므로 의심 증상만으로는 비대면진료는 불가능합니다.
 - 다만, 확진 후 동일 의료기관에서 추가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비대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 1급 또는 2급 감염병 확진 이후에 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가 가능합니다.
 - ▶ 예) A 이비인후과에서 검사, 확진 후 B 이비인후과 또는 C 피부과에서 추가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Q15

의사소통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경우 어떻게 비대면진료를 받나요?

- 화상통신을 통해 본인 확인, 진찰 등을 실시하고 환자의 보호자(가족·지인)가 의사소통을 위해 환자를 대신하여 상담을 보조할 수 있습니다.

Q16

계도기간에는 대상환자 제한없이 비대면진료 가능한가요?

- 시범사업은 6월 1일부터 대상환자를 제한하여 시행됩니다.
 - 다만, 환자와 의료기관 등에게 제도 적응기간을 부여하고자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시범사업에 대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3. 비대면진료 적용범위 관련

Q17 입원 중인 환자가 타 의료기관으로 비대면진료를 요청할 수 있나요?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는 외래진료시 산정하는 수가로 요양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는 비대면진료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 입원 중인 환자는 타 기관으로의 진료의뢰 절차에 따라 대면진료를 해야 합니다.

Q18 요양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촉탁의(계약의사)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비대면진료 가능한가요?

- 요양시설 입소자도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라면 가능합니다.
 - 다만, 원외처방전 발급한 경우에 한해 계약의사 대면진찰 비용의 50%만 인정되며, 이는 장기요양보험에서 지급합니다.

Q19 진단서 및 의뢰서 발급을 위한 비대면진료를 요청할 수 있나요?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2] '비급여 대상'에 따라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아니 하는 건강검진, 장애인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 등은 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진단서 및 의뢰서 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비대면진료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 또한, 진단서 및 의뢰서 발급은 대면진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비대면진료를 통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4.

수가 산정기준 관련

Q20

진찰료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는 소아·야간·공휴 등 각종 가산을 적용할 수 있나요?

- 비대면진료 시 진찰료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에 각종 가산은 산정할 수 없습니다.

Q21

동일 기관의 2인 이상의 의사에게 비대면진료 시행시 진찰료 및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의사가 같은 날 진찰을 한 경우 진찰료 및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는 1회만 산정합니다.
- 2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설치되어 있고 해당 과의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동일 환자의 다른 상병에 대하여 전문과목 또는 전문분야가 다른 진료담당 의사가 각각 진찰한 경우에는 진찰료 및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를 각각 산정할 수 있습니다.

Q22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산정 시 다른 행위 수가를 별도로 산정할 수 있나요?

- 비대면진료만 실시한 경우 진찰료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만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대면진료와 대면진료를 같은 날 시행한 경우 대면진료 시 시행한 행위 수가는 산정할 수 있습니다.
- ▶ **(산정 불가항목 예시)** 정신요법료, 가-14 만성질환관리료, 가-22 의료질평가지원금, 가-24-1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등

Q23

타 시범사업 대상환자 관리를 위한 비대면 상담을 시행한 경우 별도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따른 진찰료 및 시범사업 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나요?

- 타 시범사업에서 대상 환자에게 전화 상담 등을 통해 비대면 환자 관리를 시행한 경우, 비대면진료 진찰료 및 시범사업 관리료와 중복 산정할 수 없습니다.
- ▶ **(예시)**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대상 환자의 요청에 따라 증상 관리, 의료 장비 관리, 응급 상황 대처 등의 내용을 비대면으로 시행한 경우 해당 시범사업의 '환자 관리료'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비대면진료 진찰료' 및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동시 산정 불가

Q24

대면진료 시 시행한 검사 결과를 전화로 통보 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나요?

- 단순한 검사 결과 통보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검사 결과 이상소견에 대해 문진·시진 등 진찰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산정이 가능합니다.
- ▶ 예) 의사가 아닌 자가 유선으로 검사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환자 진찰 없이 단순히 검사결과만 통보하는 경우 등은 제외

Q25

환자가 원하는 횟수만큼 비대면진료를 시행할 수 있나요?

- 해당 의료기관에서 동일 환자에게 한 달(월)에 최대 2회까지 시행할 수 있습니다.
- ▶ 예) 6월(2회), 7월(1회), 8월(2회)

5.

본인부담률 관련

Q26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의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되나요?

- 본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적용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및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거 보다 낮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는 특정기호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적용합니다.
 -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1 및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에 따른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해당 본인부담률을 적용합니다.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환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 의료원)에서 비대면진료를 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부담률을 적용합니다.
 - ▶ (예시) 의원 초진진찰료 17,320원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3,720원
⇒ 요양급여비용 총액 21,040원, 20% 본인부담률 적용한 4,200원 본인부담

6.

청구방법 관련

Q27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는 별도의 가산을 적용하지 않는데 진료시간에 따라 수가코드를 다르게 청구해야 하나요?

- 수가코드 분류는 해당 시범사업의 본 사업 전환 시 관련 정보 수집을 위한 것으로, 실제 진료시간에 해당하는 수가코드로 청구해주시기 바랍니다.

Q28

비대면진료 시행 당일 대면진료 시행시 진찰료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 같은 날 동일 환자에게 비대면진료와 대면진료를 중복으로 진찰을 한 경우, 진찰료는 1회(대면진찰료와 비대면진찰료 중 택1)만 청구합니다.
-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산정하는 의료기관에서는 대면(진찰료+의료질평가지원금), 비대면(진찰료+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중 선택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9

비대면진료 시행 후 당일 입원하는 경우, 어떻게 청구하나요?

- 비대면진료를 시행한 후 당일 입원하는 경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는 산정 가능하며, 입원명세서에 포함하여 청구합니다.

Q30

건강보험 자격이 있는 보훈 환자의 청구방법은?

- 건강보험(의료급여)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 환자의 경우, 명세서 일반 내역 '공상 등 구분'란에 '4 또는 B'를 기재하여 청구합니다.

Q31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에 대상환자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기재해야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는?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산정 시 대상환자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줄단위 특정내역 JX999에 해당하는 유형을 기재합니다. 단, 아래의 세가지 유형 이외의 대상환자는 JX999를 기재하지 않고 청구합니다.

* 타 JX999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여 기재하고, 반드시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기재함

대상환자 유형	기재형식
섬·벽지 거주자	비대면/A
등록 장애인	비대면/B
감염병 확진 환자	비대면/C

- 다만, 환자가 여러 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예: 섬·벽지거주자가 등록 장애인인 경우) 해당하는 유형을 모두 기재 합니다.

<진료내역>

항	목	줄번호	코드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01	02	0001	1	AA254	12,380	1	1	12,380
01	03	0002	1	IC004	3,720	1	1	3,720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코드	특정내역세부내용
2	0002	JX999	비 대 면 / A / B

7.

DUR 점검 관련

Q32

비대면진료 시행 후 의약품(비급여 포함)을 처방할 경우 DUR 점검을 실시해야 하나요?

- 비대면 진료시에 마약류, 오남용 우려의약품, 중복처방, 병용금지 성분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DUR을 통해 확인하고 처방(비급여 의약품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Q33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목록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DUR 알리미를 통해 해당정보 확인 링크(요양기관업무포털 등)를 제공합니다. 또한, 마약류(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실시간 목록은 '의약품 통합 정보시스템'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지정 품목(23개 성분)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별첨2

섬·벽지 지역

[별표 1] 섬·벽지지역(보험료경감 고시 제3조 관련)

1. 섬지역

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감지역(섬)	
인천	서구	원창동	세어도	
		중구	무의동	팔미도
	옹진군	북도면		신도, 시도, 장봉도, 모도
			연평면	대연평도, 소연평도
		백령면	백령도	
		대청면	대청도, 소청도	
		덕적면	덕적도, 소야도, 문갑도, 백아도, 울도, 굴업도, 선미도, 지도	
		자월면	자월도, 이작도, 승봉도	
		영흥면	부도	
		강화군	삼산면	서검도, 미법도
	서도면	주문도, 불음도, 아차도, 말도		
경기	안산시	풍도동	풍도, 육도	
	화성시	우정읍	국화도, 입파도	
충남	서천군	장항읍	유부도	
		보령시	오천면	효자도, 월도, 허육도, 육도, 추도, 소도, 외연도, 녹도, 호도, 삼시도, 고대도, 장고도, 대화사도, 시루섬
	서산시		대산읍	웅도
		지곡면	우도, 분점도	
		팔봉면	고파도	
	홍성군	서부면	죽도	
	태안군	안면읍	외도, 내파수도	
		근흥면	가의도, 옹도	
	당진시	석문면	난지도	
	전북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 연도, 어청도 관리도, 방축도, 비안도, 명도, 말도, 두리도, 죽도
고창군			부안면	죽도

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감지역(섬)
	부안군	위도면	위도, 식도, 거륵도, 상왕등도, 하왕등도
전남	무안군	망운면	탄도
		해제면	저도
	목포시	달동	달리도, 외달도
		율도동	율도
	여수시	화정면	월호도, 자봉도, 개도, 제도, 상화도, 하화도, 사도, 추도, 여자도, 송여자도,
		남 면	금오도, 수향도, 안도, 부도, 대두라도, 소두라도, 나발도, 대횡간도, 소횡간도, 연도
		삼산면	거문도, 서도, 동도, 초도, 손죽도, 소거문도, 평도, 광도
		율촌면	송도, 대늑도, 소늑도
		화양면	운두도
		월호동	대경도, 소경도, 야도
		시전동	장도
		삼일동	삼간도
		돌산읍	송도
	고흥군	도양읍	시산도, 상화도, 하화도, 득량도
		도화면	죽도
		포두면	첨도
		봉래면	수락도, 애도
		과역면	진지도
		남양면	우도
		금산면	연흥도
	보성군	별교읍	장도, 동도, 지주도, 해도
	진도군	진도읍	저도
		고군면	금호도
		의신면	모도, 구자도
		조도면	상조도, 하조도, 서거차도, 동거차도, 옥도, 가사도, 소마도, 라베도, 맹골도, 성남도, 죽향도, 독거도, 청등도, 모도, 진목도, 대마도, 눌옥도, 외병도,

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감지역(섬)
			내병도, 관매도, 관사도
	해남군	화산면	하마도, 상마도, 중마도
		송지면	어불도
	강진군	도암면	가우도
	영광군	낙월면	상낙월도, 하낙월도, 임병도, 송이도
			각이도, 석만도, 영외도, 신기도, 오도
			죽도, 안마도
	완도군	금일읍	금일도, 원도, 신도, 소랑도, 장도, 충도
			다랑도, 섭도, 우도, 황제도
		노화읍	노화도, 마삭도, 노록도, 넓도, 서넙도, 어룡도, 대장구도, 대재원도, 후장구도, 죽굴도, 마한도
		군외면	사후도, 고마도, 토도, 흑일도, 백일도, 서화도, 동화도, 양도
		신지면	모향도
		고금면	넙도, 초완도
		청산면	청산도, 장도, 여서도, 소모도, 대모도
		소안면	소안도, 당사도, 횡간도, 구도
		금당면	금당도, 화도, 허우도, 비견도
		보길면	보길도, 예작도
		생일면	생일도, 덕우도
	신안군	지도읍	어의도, 대포작도, 소포작도, 선도, 울도
		증도면	병풍도, 대기점도, 소기점도, 소악도, 화도
		임자면	재원도, 부남도
		비금면	본도, 상수치도, 하수치도
		도초면	본도, 우이도, 동소우이, 서소우이, 죽도
		흑산면	본도, 영산도, 장도, 다물도, 대둔도, 흥도, 상태도, 중태도, 하태도, 만재도, 가거도
		하의면	본도, 개도, 장병도, 문병도, 능산도, 장재도, 신도, 대야도, 옥도
		신의면	본도, 고사도, 평사도, 기도
		장산면	본도, 마진도, 울도, 백야도, 막금도

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감지역(섬)
		안좌면	박지도, 반월도, 사지도, 부소도, 요령도
		암태면	당사도, 초란도
		압해면	가란도, 효지도, 외안도, 고이도, 꽃섬, 항마도, 매화도, 마산도
경북	울릉군	울릉읍 등	울릉도, 죽도, 독도
경남	사천시	동서동	신수도, 신도, 저도, 마도
		서포면	진도, 월등도
	진주시	귀곡동	귀곡도
	통영시	산양읍	오비도, 곤리도, 학림도, 연대도, 만지도 추도, 오곡도, 송도, 저도
		용남면	지도, 수도, 어의도
		도산면	연도, 읍도
		광도면	입도, 저도
		육지면	육지본도, 국도, 봉도, 초도, 갈도, 연화도, 우도, 상노대도, 하노대도, 납도, 두미도
		한산면	한산본도, 비산도, 좌도, 추봉도, 용초도, 비진도 죽도, 매물도, 소매물도, 가왕도, 장사도
		사랑면	상도, 하도, 수우도
	거제시	일운면	지심도, 내도, 외도
		장목면	이수도
		사등면	고개도
		둔덕면	화도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노도
		미조면	(미조리)조도, 호도
	창원시	구산면	큰닭섬, 실리도
		진동면	양도, 송도, 수우도
		웅천동	연도, 우도
		태평동	잠도
	고성군	하일면	자란도
		삼산면	와도

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감지역(섬)
제주	제주시	추자면	횡간도, 추포도, 추자도
		한림읍	비양도
		우도면	우도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도, 마라도

2.벽지지역

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감지역(리·부락)	경감지역(도로명 주소)
강원	홍천군	내면	울전2리	문바위길 119~176, 내린천로 638~704 살둔길, 살둔강변길 9~200
			울전3리	밤바치길, 밤바치길 45번길 밤바치길 431번길, 밤바치길 210번길
			방내2리	여차동길, 여차동길 499번길 여차동길 386번길
			광원리	삼봉휴양길 276
	춘천시	동면	품안리	품안리길
			품걸1리, 품걸2리	품걸길, 야시대로
			신이리	연엽골길, 신이리길, 우무골길
		북산면	내평리	내평길
			부귀리	삼막길 6-4~67, 부귀로 782-8~954, 텃골길
			물로1리	삽다리길, 갈골길
			물로2리	물로길, 절골길
			대동리	대동길
			대곡리	더운샘길
			추전리	북산로 1039~1053, 소양호로 650~652
			청평2리	삼막길 534~663
	횡성군	청일면	(봉명리)안구저비	봉명로 129번길 6~233, 봉명로 227번길 6~68, 봉명로 593번길 1~103
		강림면	(월현1리)덕초현	월안길 215~596, 월안1길 1~113
	강릉시	강동면	(언별1리)단경골	단경로 928-9~1389
		연곡면	(삼산3리)부연동	부연동길 579~1056, 부연동1길 70~ 96-14
	삼척시	하장면	(중봉리)소내, 터골	중봉당골길 1127-85~1159

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감지역(리·부락)	경감지역(도로명 주소)
		노곡면	개산리	개산길 430-424 ~ 549-33
		가곡면	(풍곡리)덕품, 삼방, 광업소	덕풍길 984-131 ~ 1113
	평창군	진부면	(봉산리)모리재, 봉두곶리, 발왕동, 지칠지	신기봉산로 670~1424
	속초시	설악동	-	설악산로 1119-542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2리3반)가잔동	부연동길 1303~1459-69, 1459-71
			법수치리	법수치길 548~1176
			면옥치리	면옥치길 127~518, 송이로 1471~1516, 노루골길 384~456
		서면	오색리	대청봉길 1
	정선군	신동읍	(덕천리)연포	연포길 530~794
			(운치3리)설논	설론길
		화암면	(북동리)한바위	함바위길
		북평면	(숙암리)단임	단임길 397~1207-53, 숙암장재터길
		임계면	(임계4리)평양촌	평양마을길 178~651, 노루마당길 37~270-47
			(도전2리)내도전	내도전길 460~745
	화천군	화천읍	동촌1리	호음로 473~1322, 운봉동길 35~153
			동촌2리	비수구미길 461-2056, 평화로 2393~3481-90
		간동면	방천1리	신내길, 갓골길, 간척월명로 573-1~1490-69
			방천2리	운수길
	양구군	양구읍	상무룡1리	상무룡로 358~798
			상무룡2리	서호길, 간척월명로 1504~1537 간척월명로 1863번길 327, 남밭길 513
	인제군	인제읍	(귀둔1리)군량동	한석산로 2063~2387
		남면	수산리	수산로 328~1095, 무학길

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감지역(리·부락)	경감지역(도로명 주소)
			신월리	신월로, 신월안길
		기린면	진동2리	곰배령길, 설피밭길 조침령로 2092-13~2250
			(방동2리)조경동, 아침가리	방동약수로 677~817
		상남면	미산1리	왕성동길, 내린천로 1130~1875, 개인약수길
		북면	용대리	백담로 1755, 백담로 1925, 백담로 1220
	고성군	간성읍	탑동2리	탑동길 494~724-69, 관대바위길 491
			어천3리	관대바위길 38-18~278, 꽃내마루길 20-20~136 꽃대마을길 48-25~202
			흘2리	흘리령길 95~398, 흘리령1길 60~203
		현내면	마달리	백두대간로 775-19~931-14, 마달1길 1-5~90 마달2길 19~52, 89-3~176, 유천쌍계길 53, 245 건봉사로 747-6~747-12
			명호리	통일전망대로 452~457-3, 동해대로 9375~9386
			사천리	동해대로 9049~9109, 통일전망대로 180
울산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한실	한실길
경남	밀양시	산내면	(용전리)오치마을	용전1길 6-11~422-4, 용전리 1807
		단장면	(고례리)바드리마을	바드리길 385~643-4
		부북면	(대항리)평전마을	평밭길 19~80-13, 화악산길 351~487
		상동면	(도곡리)솔방마을	도곡1길 97-29~162
		무안면	(운정리)노리실마을	운정안길 1-6~200
	산청군	신안면	(안봉리)둔철	둔철산로, 둔철산로438번길, 둔철산로472번길
		오부면	(일물리)일물	방실일물길, 참새미로, 오동로, 오동로598번길
		금서면	(오봉리)오봉	화계오봉로
		시천면	내대리	세석길 217-573
			중산리	지리산대로 320-103

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감지역(리·부락)	경감지역(도로명 주소)
		삼장면	유평리	치발목길 428
	함양군	마천면	강청리	백무동로 373
경북	김천시	증산면	수도리	수도길 865-13~1438
			황점리	황점1길 70-100~807
	안동시	임동면	사월리(보마골)	한절골길 356-384
			(박곡리)지례	지례예술촌길 390~427
	영주시	단산면	마락리	영단로 1236-1~1522-4
		부석면	남대리	영부로 847-3~1199-24(남대리) *영부로 1028-10은 제외 영부로890번길 17~236(남대리)
	상주시	외서면	(대전2리)갈골	하나동1길, 하나동2길, 송죽동1길, 송죽동2길, 행복동길, 낙원동길
		은척면	장암2리	수예길 16~132
		화남면	동관2리	평온동관로 379-1~385, 비룡동관로 967~1162 동관2길, 동관3길
	문경시	가은읍	수예리	수예길, 작약로 412~652
		동로면	명전1리	당곡길, 명전길 468~702
		농암면	내서3리	승리동길, 백합동1길, 백합동2길 다락갈골길 220-9~279-72
	경산시	용성면	매남4리	구룡마을길 58길
			매남리	구룡마을길187-9
	청송군	안덕면	근곡리(안낫실)	헌실낫실길 397-46~423
		현서면	(무계2리)칠미기	면봉산길 685-1017
	영양군	영양읍	무학리	비리동천길 335~635-28
		석보면	포산리	포산길 280-14~319

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감지역(리·부락)	경감지역(도로명 주소)
		수비면	(신암리)새신	새신길 26~225
			(본신리)번동	본신로 95-3~348
	영덕군	강구면	상직3리	직천길 666 ~ 688
		지품면	옥류리	내옥류길, 외옥류길
		축산면	조항리	조항길, 칠성길 843-5~846
	봉화군	소천면	(고선2리)구마동	구마동길 307-45~1518
			남회룡리	개내골길 8, 138, 남회룡로 199~1291
			(두음리)듬골	두음길 528-20~934-16
			(분천1리)풍애	풍애길 258~566-39
			(분천2리)원곡	원곡길 22-37~124, 승부길 1158-158
		재산면	갈산2리(우련전)	개내골길 92~189, 남회룡로 9~79-121 일월산길 14-28~194
		석포면	승부리	승부길 358~1162-55, 마무이길 26~139 교동길 40~142
			(석포1리)반야	반야길 475~895-25
	울진군	금강송 면	왕피1리, 왕피2리	한내길, 양지길, 동수골길, 거리고길, 병위길, 왕피길 589~1762-8
			(전곡리)원곡	전곡2길
			전내	전곡1길
		근남면	(구산3리)원심	원심길
			오르마	왕피천로 762-1~784
		매화면	(길곡리)내길	길곡길마길 84~240
충북	충주시	양성면	(영죽리)상영죽마을	상영죽길 111~212-1, 영죽요골길 47~189 영죽고개길 411~644
		산척면	(석천리)명암마을 합천마을, 석문마을	명암길 5~40, 석천길 54~522, 화수길 4~53, 회고길 8~81, 석문길 6~184, 송골길 6~38,

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감지역(리·부락)	경감지역(도로명 주소)
				월천길 6~123
	제천시	청풍면	오산리	호반로 2086~2217, 호반로1길
			단둔리	호반로 2686~2866, 호반로3길
			방흥리	호반로 2408~2524
			진목리	호반로 2065, 호반로 2276, 갈골만지길 47~62
전북	임실군	운암면	(금기리)시랑골	금기길 326~342-209
			(청운리)거둔이	청운1길 326~384
			박실	청운2길 82~164
			(월면리)월면	월면길 398-6~422
			(지천리)지천	지천길 180~437-12
	남원시	산내면	부운리	와운길 324
전남	장흥군	관산읍	농안리	칠관로 842-1150
경기	개성시		개성공업지구	개성공업지구

※ 벽지지역 해당 여부가 리·부락에 의할 때와 도로명 주소에 의할 때가 다른 경우나 도로명 주소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리·부락 기준을 우선으로 한다.

별첨3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목록

□ 마약류 및 향정신성 의약품 허가 현황('23.5월 기준)

※ '23.5월 기준 수입·제조허가받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완제품) 목록으로 일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연번	품목기준코드	제품명	업체명
1	199604972	구주구연산펜타닐주사	구주제약(주)
2	200009376	구주알펜타닐주(염산알펜타닐)	구주제약(주)
3	200308503	구주염산모르핀주	구주제약(주)
4	199604973	구주염산페치딘주	구주제약(주)
5	199806858	구주인산코데인정	구주제약(주)
6	201603163	구주펜타닐시트르산염주사(바이알)	구주제약(주)
7	200512164	구주황산모르핀주사	구주제약(주)
8	202009292	구주황산모르핀주사10mg/ml(모르핀황산염수화물)	구주제약(주)
9	202009293	구주황산모르핀주사15mg/ml(모르핀황산염수화물)	구주제약(주)
10	201707583	나르코설하정100마이크로그램(펜타닐시트르산염)	(주)비씨월드제약
11	201804098	나르코설하정200마이크로그램(펜타닐시트르산염)	(주)비씨월드제약
12	201804456	나르코설하정300마이크로그램(펜타닐시트르산염)	(주)비씨월드제약
13	200109954	날페인주사10밀리그램(날부핀염산염)	명문제약(주)
14	200410878	노스판패취10 μ g/h(부프레노르핀)	한국먼디파마 유한회사
15	200410879	노스판패취20 μ g/h(부프레노르핀)	한국먼디파마 유한회사
16	200410877	노스판패취5 μ g/h(부프레노르핀)	한국먼디파마 유한회사
17	201603372	뉴신타서방정100밀리그램(타펜타돌염산염)	(주)한국안센
18	201603374	뉴신타서방정150밀리그램(타펜타돌염산염)	(주)한국안센
19	201708383	뉴신타서방정200밀리그램(타펜타돌염산염)	(주)한국안센
20	201603373	뉴신타서방정50밀리그램(타펜타돌염산염)	(주)한국안센
21	201707914	뉴신타아이알정50밀리그램(타펜타돌염산염)	(주)한국안센
22	200512174	다이트린정(펜디메트라진타르타르산염)	영일제약(주)
23	199907280	달마돔정(플루라제팜염산염)	고려제약(주)
24	199002733	대원구연산펜타닐주사액	대원제약(주)
25	197700525	대원디아제팜정2밀리그램(수출명:디아잠정2밀리그램) (수출명2:트레즈콘정2밀리그램)	대원제약(주)
26	200109987	대원디아제팜주사액	대원제약(주)
27	197700526	대원디아제팜주사액(수출명:데팜주사액(디아제팜))	대원제약(주)
28	197100252	대원루미날주사액(주사용페노바르비탈나트륨)(수출명: 루미돈주사액)	대원제약(주)
29	201208284	대원모르핀황산염주사액1mg/mL(바이알)	대원제약(주)
30	197400559	대원염산페치딘주사액	대원제약(주)
31	201200585	대원펜타닐시트르산염주사액	대원제약(주)
32	201302662	대한루미날주10%(주사용페노바르비탈나트륨)	대한약품공업(주)

연번	품목기준코드	제품명	업체명
33	200805994	대한펜타닐주사액	대한약품공업(주)
34	201004413	대화노브제정(펜터민염산염)	대화제약(주)
35	200308509	데코인정(코데인인산염수화물)	성원애드코제약(주)
36	200610866	데파스정0.25밀리그램(에티졸람)	(주)종근당
37	199002729	데파스정0.5밀리그램(에티졸람)	(주)종근당
38	199002730	데파스정1밀리그램(에티졸람)	(주)종근당
39	201602478	도미덴주1밀리그램(레미펜타닐염산염)	명문제약(주)
40	201602479	도미덴주2밀리그램(레미펜타닐염산염)	명문제약(주)
41	201602477	도미덴주5밀리그램(레미펜타닐염산염)	명문제약(주)
42	200801304	듀로제식디트랜스패취100 μ g/h(펜타닐)	(주)한국얀센
43	200512180	듀로제식디트랜스패취12 μ g/h(펜타닐)	(주)한국얀센
44	200410873	듀로제식디트랜스패취25 μ g/h(펜타닐)	(주)한국얀센
45	200410874	듀로제식디트랜스패취50 μ g/h(펜타닐)	(주)한국얀센
46	202006161	디에칠정(디에틸프로피온염산염)	(주)인트로바이오파마
47	200610885	디에타민정(수출명:DIETOP)(염산펜터민)	(주)대웅제약
48	200512148	디에타민정(펜터민염산염)	(주)대웅제약
49	200604158	디에트정(펜디메트라진타르타르산염)	(주)비보존제약
50	199704622	디코데서방정(디히드로코데인타르타르산염)	하나제약(주)
51	200410825	디피온정(디에틸프로피온염산염)	(주)바이넥스
52	200210689	딜리드정2밀리그램(히드로모르폰염산염)	하나제약(주)
53	200308474	딜리드주10밀리그램(히드로모르폰염산염)	하나제약(주)
54	200210692	딜리드주1밀리그램(히드로모르폰염산염)	하나제약(주)
55	200308472	딜리드주2밀리그램(히드로모르폰염산염)	하나제약(주)
56	200308473	딜리드주4밀리그램(히드로모르폰염산염)	하나제약(주)
57	200604159	라이트진정(펜디메트라진타르타르산염)	(주)한국비엠아이
58	198301310	라제팜정(플루니트라제팜)	환인제약(주)
59	200604143	레노싰정(디에틸프로피온염산염)	명문제약(주)
60	201707866	레디펜정(펜터민염산염)	명문제약(주)
61	200512154	레디펜정(펜터민염산염)	명문제약(주)
62	201404510	레미바주1밀리그램(레미펜타닐염산염)	하나제약(주)
63	201404509	레미바주2밀리그램(레미펜타닐염산염)	하나제약(주)
64	201404511	레미바주5밀리그램(레미펜타닐염산염)	하나제약(주)
65	200410864	레스피렌시럽 5밀리그램/밀리리터(지페프롤염산염)	아주약품(주)
66	200410863	레스피렌정 37.5밀리그램(지페프롤염산염)	한화제약(주)
67	200512175	레티스정(펜터민염산염)	(주)비보존제약
68	201602990	레피온정(디에틸프로피온염산염)	(주)제뉴파마
69	198501803	로라반정0.5밀리그램(로라제팜)	환인제약(주)
70	198501802	로라반정1밀리그램(로라제팜)	환인제약(주)

연번	품목기준코드	제품명	업체명
71	200512162	로우칼정(펜터민염산염)	유니메드제약(주)
72	200308540	로지팜정3밀리그램(브로마제팜), 브라제팜정3밀리그램(브로마제팜), 렉소만정3밀리그램(브로마제팜)	명인제약(주)
73	200604153	로페트정(펜터민염산염)	(주)팜젠사이언스
74	198501814	루나팜정(플루니트라제팜)	명인제약(주)
75	198100697	리버티정10밀리그램(클로르디아제폭시드염산염)	환인제약(주)
76	199203463	리버티정5밀리그램(클로르디아제폭시드염산염)	환인제약(주)
77	200610884	리보트릴정(클로나제팜)	(주)종근당
78	199907281	리브락스정	고려제약(주)
79	200210719	마이폴캡슐(코데인,이부프로펜,아세트아미노펜)	성원애드코제약(주)
80	200611550	마자놀정(마진돌)	광동제약(주)
81	200713358	멀티심텀콜드릴리프어덜트씨에프시럽	맥넬티제약(주)
82	201111088	메디키네티타드캡슐10mg(메틸페니데이트염산염)	명인제약(주)
83	201111091	메디키네티타드캡슐20mg(메틸페니데이트염산염)	명인제약(주)
84	201111093	메디키네티타드캡슐30mg(메틸페니데이트염산염)	명인제약(주)
85	201111087	메디키네티타드캡슐40mg(메틸페니데이트염산염)	명인제약(주)
86	201111086	메디키네티타드캡슐5mg(메틸페니데이트염산염)	명인제약(주)
87	197900538	메로드주사액(디아제팜)	동화약품(주)
88	200512167	메타맥스정(펜터민염산염)	구주제약(주)
89	198601875	명문구연산펜타닐주사	명문제약(주)
90	199304456	명문모르핀염산염수화물주사	명문제약(주)
91	201405703	명문알프라졸람정0.25밀리그램	명문제약(주)
92	201405704	명문알프라졸람정0.5밀리그램	명문제약(주)
93	199203470	명문염산페치딘주사	명문제약(주)
94	199403297	명문인산코데인정	명문제약(주)
95	201300115	명문펜타닐시트르산염주사(앰플)	명문제약(주)
96	201302208	명문펜타닐패취12 μ g/h(펜타닐)	명문제약(주)
97	201302209	명문펜타닐패취25 μ g/h(펜타닐)	명문제약(주)
98	201302210	명문펜타닐패취50 μ g/h(펜타닐)	명문제약(주)
99	198501813	명인디아제팜정10밀리그램	명인제약(주)
100	198501811	명인디아제팜정2밀리그램	명인제약(주)
101	198501812	명인디아제팜정5밀리그램	명인제약(주)
102	199604962	명인브로마제팜정3밀리그램	명인제약(주)
103	200210699	미다컴주15밀리그램(미다졸람)	명문제약(주)
104	200210698	미다컴주5밀리그램(미다졸람)	명문제약(주)
105	200610874	미졸람주1mg/ml(미다졸람)	(주)휴온스
106	200700501	바리움정5밀리그램(디아제팜)	(주)종근당
107	200009363	바스컴주(미다졸람)	하나제약(주)
108	200610867	바스컴주15밀리그램(미다졸람)	하나제약(주)

연번	품목기준코드	제품명	업체명
109	202106240	바이파보주20밀리그램(레미마졸람베실산염)	하나제약(주)
110	202100162	바이파보주50밀리그램(레미마졸람베실산염)	하나제약(주)
111	200109947	부광미다졸람주사	부광약품(주)
112	200109948	부광미다졸람주사15밀리그램/3밀리리터	부광약품(주)
113	199403308	부놀주사2밀리그램/밀리리터(부토르파놀타르타르산염)	한림제약(주)
114	199604964	부토판주사1밀리그램/밀리리터(부토르파놀타르타르산염)	명문제약(주)
115	199403306	부토판주사2밀리그램/밀리리터(부토르파놀타르타르산염)	명문제약(주)
116	201801929	부프레인패취35 μ g/h(부프레노르핀)	명문제약(주)
117	201801928	부프레인패취52.5 μ g/h(부프레노르핀)	명문제약(주)
118	201801930	부프레인패취70 μ g/h(부프레노르핀)	명문제약(주)
119	201101017	비.브라운 프로포폴-리푸로1%주	비브라운코리아(주)
120	201101016	비.브라운프로포폴-리푸로1%주(앰플)	비브라운코리아(주)
121	200712832	비씨모르핀황산염수화물주사10mg	(주)비씨월드제약
122	201604036	비씨모르핀황산염수화물주사10mg/mL(바이알)	(주)비씨월드제약
123	200712831	비씨모르핀황산염수화물주사15mg/ml	(주)비씨월드제약
124	202005565	비씨모르핀황산염수화물주사1mg/mL(바이알)	(주)비씨월드제약
125	199403311	비씨염산페치딘주사액	(주)비씨월드제약
126	199704636	비씨인산코데인정	(주)비씨월드제약
127	199403310	비씨펜타닐시트르산염주사	(주)비씨월드제약
128	201308945	비엠진정(펜터민염산염)	(주)한국비엠아이
129	200604160	비엠진정(펜터민염산염)	(주)한국비엠아이
130	200604166	비터펜정(펜터민염산염)	(주)제뉴파마
131	198702205	빅손정(에틸로플라제페이트)	현대약품(주)
132	199403293	빅손정1밀리그램(에틸로플라제페이트)	현대약품(주)
133	200704597	산도스졸피뎀정10mg(주석산졸피뎀)	한국산도스(주)
134	197700535	삼진디아제팜정2밀리그램	삼진제약(주)
135	197700536	삼진디아제팜정5밀리그램	삼진제약(주)
136	197900546	삼진디아제팜주	삼진제약(주)
137	198100698	센틸정10밀리그램(클로바잠)	(주)한독
138	198100711	센틸정5밀리그램(클로바잠)	(주)한독
139	201702379	셀트리온클로바잠정10밀리그램	(주)셀트리온제약
140	201702378	셀트리온클로바잠정20밀리그램	(주)셀트리온제약
141	199403314	수펜탈주사50마이크로그램/밀리리터(수펜타닐시트르산염)	(주)비씨월드제약
142	198501817	스리반정0.5밀리그램(로라제팜)	명인제약(주)
143	198501816	스리반정1밀리그램(로라제팜)	명인제약(주)
144	201701569	스립정10밀리그램(졸피뎀타르타르산염)	유니메드제약(주)
145	201701570	스립정5밀리그램(졸피뎀타르타르산염)	유니메드제약(주)
146	199403304	스토몰주사1밀리그램/밀리리터(모르핀황산염수화물)	명문제약(주)

연번	품목기준코드	제품명	업체명
147	200711277	스토몰주사20밀리그램(모르핀황산염수화물)	명문제약(주)
148	200700636	스틸녹스CR정12.5밀리그램(졸피뎀타르타르산염)	(주)한독
149	200700635	스틸녹스CR정6.25밀리그램(졸피뎀타르타르산염)	(주)한독
150	200700634	스틸녹스정10밀리그램(졸피뎀타르타르산염)	(주)한독
151	201406022	스틸렉스정10밀리그램(졸피뎀타르타르산염)	명문제약(주)
152	202004585	스프라바토나잘스프레이(에스케타민염산염)	(주)한국얀센
153	200512161	슬레민정(펜터민염산염)	(주)메디카코리아
154	200009371	씨·아이·에이캡슐	명문제약(주)
155	200610878	씬스펜정(펜터민염산염)	조아제약(주)
156	201100959	아네폴주사(프로포폴)	하나제약(주)
157	200512153	아드펜정(펜디메트라진타르타르산염)	(주)한국파마
158	200308497	아디펙스정(펜터민염산염)	광동제약(주)
159	201205550	아디펙스정18.75mg(펜터민염산염)	광동제약(주)
160	201200682	아이알코돈정10밀리그램(옥시코돈염산염)	유니메드제약(주)
161	202005937	아이알코돈정20밀리그램(옥시코돈염산염)	유니메드제약(주)
162	200109958	아이알코돈정5밀리그램(옥시코돈염산염)	유니메드제약(주)
163	199203480	아졸락정0.25밀리그램(알프라졸람)	유니메드제약(주)
164	199203482	아졸락정0.5밀리그램(알프라졸람)	유니메드제약(주)
165	200109998	아크날주사20밀리그램(날부핀염산염)	명문제약(주)
166	200604169	아트민정(펜터민염산염)	(주)마더스제약
167	197900543	아티반정0.5밀리그램(로라제팜)	일동제약(주)
168	197900544	아티반정1밀리그램(로라제팜)	일동제약(주)
169	198200943	아티반주사(로라제팜)	일동제약(주)
170	201305911	알페닐주사(알펜타닐염산염)(바이알)	대원제약(주)
171	200410831	알프라낙스정0.25밀리그램	(주)한국파마
172	200410832	알프라낙스정0.5밀리그램	(주)한국파마
173	202300713	알프라원정0.25밀리그램(알프라졸람)	하나제약(주)
174	202300714	알프라원정0.5밀리그램(알프라졸람)	하나제약(주)
175	202203919	알프람정0.125밀리그램(알프라졸람)	환인제약(주)
176	198702203	알프람정0.25밀리그램(알프라졸람)	환인제약(주)
177	201308678	알프람정0.25밀리그램(알프라졸람)(Alpram Tablet 0.25mg)	환인제약(주)
178	199203462	알프람정0.4밀리그램(알프라졸람)	환인제약(주)
179	201309193	알프람정0.4밀리그램(알프라졸람)(Alpram Tablet 0.4mg)	환인제약(주)
180	198702202	알프람정0.5밀리그램(알프라졸람)	환인제약(주)
181	201308720	알프람정0.5밀리그램(알프라졸람)(Alpram Tablet 0.5mg)	환인제약(주)
182	200605325	암페몬정(디에틸프로피온염산염)	조아제약(주)
183	200605331	액틱구강정1200마이크로그램(구연산펜타닐)	현대약품(주)
184	200606263	액틱구강정1600마이크로그램(구연산펜타닐)	현대약품(주)

연번	품목기준코드	제품명	업체명
185	200605327	액틱구강정200마이크로그램(펜타닐시트르산염)	현대약품(주)
186	200605328	액틱구강정400마이크로그램(펜타닐시트르산염)	현대약품(주)
187	200605329	액틱구강정600마이크로그램(펜타닐시트르산염)	현대약품(주)
188	200605330	액틱구강정800마이크로그램(펜타닐시트르산염)	현대약품(주)
189	201402208	앱스트랄설하정100마이크로그램(펜타닐시트르산염)	한국메나리니(주)
190	201402209	앱스트랄설하정200마이크로그램(펜타닐시트르산염)	한국메나리니(주)
191	201402210	앱스트랄설하정300마이크로그램(펜타닐시트르산염)	한국메나리니(주)
192	201402211	앱스트랄설하정400마이크로그램(펜타닐시트르산염)	한국메나리니(주)
193	200604161	에닝정(디에틸프로피온염산염)	태극제약(주)
194	200308510	에스몰핀정(모르핀황산염수화물)	성원애드코제약(주)
195	202203440	에조스타정1밀리그램(에스조피클론)	하나제약(주)
196	202203439	에조스타정2밀리그램(에스조피클론)	하나제약(주)
197	202203438	에조스타정3밀리그램(에스조피클론)	하나제약(주)
198	200210718	엔슬림정(펜디메트라진타르타르산염)	조아제약(주)
199	198802975	엔토발주100밀리그램(펜토바르비탈나트륨)	한림제약(주)
200	201908596	엘피온정25밀리그램(디에틸프로피온염산염)	(주)한국파마
201	199704618	엠에스알서방정10밀리그램(모르핀황산염수화물)	하나제약(주)
202	199704619	엠에스알서방정30밀리그램(모르핀황산염수화물)	하나제약(주)
203	201604320	엠포돈서방정10mg(옥시코돈염산염)	명문제약(주)
204	201604319	엠포돈서방정40mg(옥시코돈염산염)	명문제약(주)
205	200610879	엠포온정(디에틸프로피온염산염)	(주)마더스제약
206	199704621	염몰핀주사(모르핀염산염수화물)	하나제약(주)
207	202008746	영진조피클론정1밀리그램(에스조피클론)	영진약품(주)
208	202008747	영진조피클론정2밀리그램(에스조피클론)	영진약품(주)
209	202008748	영진조피클론정3밀리그램(에스조피클론)	영진약품(주)
210	201307450	오코돈서방정10밀리그램(옥시코돈염산염)	하나제약(주)
211	201307451	오코돈서방정20밀리그램(옥시코돈염산염)	하나제약(주)
212	201400848	오코돈서방정40밀리그램(옥시코돈염산염)	하나제약(주)
213	200210687	오코돈정	하나제약(주)
214	201605077	오코돈정10밀리그램(옥시코돈염산염)	하나제약(주)
215	201706519	오코돈주사10mg/mL(옥시코돈염산염)	하나제약(주)
216	200902334	옥시념주사10mg/ml(옥시코돈염산염)	한국먼디파마 유한회사
217	200009386	옥시콘틴서방정10밀리그램(옥시코돈염산염)	한국먼디파마 유한회사
218	200009387	옥시콘틴서방정20밀리그램(옥시코돈염산염)	한국먼디파마 유한회사
219	200009388	옥시콘틴서방정40밀리그램(옥시코돈염산염)	한국먼디파마 유한회사
220	201310074	옥시콘틴서방정60밀리그램(옥시코돈염산염)	한국먼디파마 유한회사
221	200902333	옥시콘틴서방정80mg(옥시코돈염산염)	한국먼디파마 유한회사
222	200410883	울티바주1밀리그램(레미펜타닐염산염)	민씨사나베파마(주)

연번	품목기준코드	제품명	업체명
223	200410884	울티바주2밀리그램(레미펜타닐염산염)	마쓰시다베타미코야(주)
224	200410885	울티바주5밀리그램(레미펜타닐염산염)	마쓰시다베타미코야(주)
225	201404506	울티안주1밀리그램(레미펜타닐염산염)	한림제약(주)
226	201404507	울티안주2밀리그램(레미펜타닐염산염)	한림제약(주)
227	201404508	울티안주5밀리그램(레미펜타닐염산염)	한림제약(주)
228	201605529	울티펜주1밀리그램(레미펜타닐염산염)	일성신약(주)
229	201605528	울티펜주2밀리그램(레미펜타닐염산염)	일성신약(주)
230	201605530	울티펜주5밀리그램(레미펜타닐염산염)	일성신약(주)
231	200604164	웰트민정(펜터민염산염)	(주)서울제약
232	200604151	웰피온정(디에틸프로피온염산염)	(주)휴온스
233	200604139	유한케타민50주사(케타민염산염)(동물용)	(주)유한양행
234	201400642	인스타닐나잘스프레이100마이크로그램(펜타닐시트르산염)	(주)대웅제약
235	201400643	인스타닐나잘스프레이200마이크로그램(펜타닐시트르산염)	(주)대웅제약
236	201400641	인스타닐나잘스프레이50마이크로그램(펜타닐시트르산염)	(주)대웅제약
237	200009385	일리움아자닐주사	(주)보람농산
238	201803903	자나팜정0.125밀리그램(알프라졸람)	명인제약(주)
239	198702209	자나팜정0.25밀리그램(알프라졸람)	명인제약(주)
240	199304455	자나팜정0.4밀리그램(알프라졸람)	명인제약(주)
241	198702210	자나팜정0.5밀리그램(알프라졸람)	명인제약(주)
242	198702211	자나팜정1밀리그램(알프라졸람)	명인제약(주)
243	200410869	자낙스정0.25밀리그램(알프라졸람)	비아트리스코리아(주)
244	200410870	자낙스정0.5밀리그램(알프라졸람)	비아트리스코리아(주)
245	200512184	자세틴정0.25밀리그램(알프라졸람)(수출명:ZACETIN tablet(alprazolam0.25mg))	(주)메디카코리아
246	200109957	자세틴정0.25밀리그램(알프라졸람)	(주)메디카코리아
247	198802985	자이렌정(알프라졸람)	광동제약(주)
248	198802986	자이렌정0.25밀리그램(알프라졸람)	광동제약(주)
249	202202679	잘레딕캡슐10밀리그램(잘레플론)	부광약품(주)
250	202202678	잘레딕캡슐5밀리그램(잘레플론)	부광약품(주)
251	200703757	저니스타서방정16밀리그램(히드로모르폰염산염)	(주)한국안센
252	200713053	저니스타서방정32밀리그램(히드로모르폰염산염)	(주)한국안센
253	202000262	저니스타서방정4밀리그램(히드로모르폰염산염)	(주)한국안센
254	200703756	저니스타서방정8밀리그램(히드로모르폰염산염)	(주)한국안센
255	198401387	제일모르핀염산염주사액	(주)제일제약
256	198401383	제일페노바르비탈주사액(페노바르비탈나트륨)	(주)제일제약
257	201306822	제일페노바르비탈주사액(페노바르비탈나트륨)(앰플)	(주)제일제약
258	198401386	제일페티딘염산염주사액	(주)제일제약
259	202009152	조닉스정1밀리그램(에스조피클론)	동국제약(주)
260	202009153	조닉스정2밀리그램(에스조피클론)	동국제약(주)

연번	품목기준코드	제품명	업체명
261	202009151	조닉스정3밀리그램(에스조피클론)	동국제약(주)
262	201501014	조레틸 100 주사(동물용)	주식회사 버박코리아
263	201501015	조레틸 50 주사(동물용)	주식회사 버박코리아
264	202002178	조스정1밀리그램(에스조피클론)	명인제약(주)
265	202002180	조스정2밀리그램(에스조피클론)	명인제약(주)
266	202002179	조스정3밀리그램(에스조피클론)	명인제약(주)
267	201902863	조피스타정1밀리그램(에스조피클론)	(주)휴온스
268	201902864	조피스타정2밀리그램(에스조피클론)	(주)휴온스
269	201902865	조피스타정3밀리그램(에스조피클론)	(주)휴온스
270	202007054	조피타정1밀리그램(에스조피클론)	환인제약(주)
271	202007055	조피타정2밀리그램(에스조피클론)	환인제약(주)
272	202007056	조피타정3밀리그램(에스조피클론)	환인제약(주)
273	198902801	졸민정0.125밀리그램(트리아졸람)	명인제약(주)
274	198902802	졸민정0.25밀리그램(트리아졸람)	명인제약(주)
275	200410861	졸피드정10밀리그램(졸피뎀타르타르산염)	한미약품(주)
276	201501813	졸피드정5밀리그램(졸피뎀타르타르산염)	한미약품(주)
277	200512142	졸피람정10밀리그램(졸피뎀타르타르산염)	환인제약(주)
278	201800563	졸피람정10밀리그램(졸피뎀타르타르산염)(Zolpiram Tablet 10mg)	환인제약(주)
279	200710013	졸피신정10밀리그램(졸피뎀타르타르산염)	명인제약(주)
280	201606485	졸피신정5밀리그램(졸피뎀타르타르산염)	명인제약(주)
281	200606262	졸피움정(졸피뎀타르타르산염)	고려제약(주)
282	201606513	카비레미펜타닐주 1mg(레미펜타닐염산염)	포레지나우스카비코리아(주)
283	201606512	카비레미펜타닐주 2mg(레미펜타닐염산염)	포레지나우스카비코리아(주)
284	201606511	카비레미펜타닐주 5mg(레미펜타닐염산염)	포레지나우스카비코리아(주)
285	200410865	케이터민정(펜터민염산염)	주식회사제뉴원사이언스
286	200705164	케토민주10밀리그램/밀리리터(염산케타민)	대한약품공업(주)
287	201308344	케토민주10밀리그램/밀리리터(케타민염산염)	대한약품공업(주)
288	199907257	코노펜캡슐	하나제약(주)
289	200712962	코푸나이트타임시럽	맥널티제약(주)
290	200904781	코푸앤콜드 릴리프 어덜트 디엠시럽	맥널티제약(주)
291	202005265	콘서타OROS서방정18밀리그램(메틸페니데이트염산염)	(주)한국안센
292	202005266	콘서타OROS서방정27밀리그램(메틸페니데이트염산염)	(주)한국안센
293	201501271	콘서타OROS서방정36밀리그램(메틸페니데이트염산염)	(주)한국안센
294	201501273	콘서타OROS서방정54밀리그램(메틸페니데이트염산염)	(주)한국안센
295	201905408	큐시미아캡슐11.25mg/69mg	알보젠코리아(주)
296	201905407	큐시미아캡슐15mg/92mg	알보젠코리아(주)
297	201905406	큐시미아캡슐3.75mg/23mg	알보젠코리아(주)
298	201905405	큐시미아캡슐7.5mg/46mg	알보젠코리아(주)

연번	품목기준코드	제품명	업체명
299	200904275	타진서방정 10/5mg	한국먼디파마 유한회사
300	200904276	타진서방정 20/10mg	한국먼디파마 유한회사
301	201104437	타진서방정 40/20mg	한국먼디파마 유한회사
302	201104436	타진서방정 5/2.5mg	한국먼디파마 유한회사
303	201708261	타진서방정80/40mg	한국먼디파마 유한회사
304	200512163	타코펜캡슐	구주제약(주)
305	200610872	테뉴에이트정(디에틸프로피온염산염)	알보젠코리아(주)
306	201700817	트랜스텍패취35 μ g/h(부프레노르핀)	한국먼디파마 유한회사
307	201700804	트랜스텍패취52.5 μ g/h(부프레노르핀)	한국먼디파마 유한회사
308	201700805	트랜스텍패취70 μ g/h(부프레노르핀)	한국먼디파마 유한회사
309	201605409	트리람정0.125밀리그램(트리아졸람)	환인제약(주)
310	198902794	트리람정0.25밀리그램(트리아졸람)	환인제약(주)
311	201404504	티바레주1밀리그램(레미펜타닐염산염)	(주)비씨월드제약
312	201404505	티바레주2밀리그램(레미펜타닐염산염)	(주)비씨월드제약
313	201404503	티바레주5밀리그램(레미펜타닐염산염)	(주)비씨월드제약
314	200512177	틴틴정(펜터민염산염)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315	202103386	파마에스조피클론정1mg	(주)한국파마
316	202103387	파마에스조피클론정2mg	(주)한국파마
317	202103385	파마에스조피클론정3mg	(주)한국파마
318	200512183	파마원주(펜타조신)	명문제약(주)
319	200606261	파마주석산졸피뎀정(졸피뎀타르타르산염)	(주)한국파마
320	200711284	판베시서방캡슐 30밀리그램(펜터민염산염)	부광약품(주)
321	202000148	팩펜트나잘스프레이100마이크로그램(펜타닐시트르산염)	한국메나리니(주)
322	202000149	팩펜트나잘스프레이400마이크로그램(펜타닐시트르산염)	한국메나리니(주)
323	198902797	페니드정10밀리그램(메틸페니데이트염산염)	환인제약(주)
324	201901159	페니드정10밀리그램(메틸페니데이트염산염)(Penid Tab. 10mg)	환인제약(주)
325	198902796	페니드정5밀리그램(메틸페니데이트염산염)	환인제약(주)
326	200604163	페니민정(펜터민염산염)	태극제약(주)
327	200604162	페닝정(펜디메트라진타르타르산염)	태극제약(주)
328	200410827	페딘정(펜터민염산염)	명인제약(주)
329	200705351	페로스핀정10밀리그램(메틸페니데이트염산염)	명인제약(주)
330	201600735	페로스핀정5밀리그램(메틸페니데이트염산염)	명인제약(주)
331	200410862	페스틴정(펜터민염산염)	대한뉴팜(주)
332	200410854	페티노정(펜디메트라진타르타르산염)	(주)팜젠사이언스
333	200908478	펜더정(펜터민염산염)	한국프라임제약(주)
334	200604148	펜디라정(펜디메트라진타르타르산염)	(주)뉴젠팜
335	200512146	펜디라진정(펜디메트라진타르타르산염)	대원제약(주)
336	200908479	펜디멘정(펜디메트라진타르타르산염)	한국프라임제약(주)

연번	품목기준코드	제품명	업체명
337	200806249	펜디민정(펜디메트라진타르타르산염)	구주제약(주)
338	201702111	펜디세미정(펜디메트라진타르타르산염)	(주)휴온스
339	200410824	펜디싌정(펜디메트라진타르타르산염)	(주)바이넥스
340	200807061	펜디에프정(펜디메트라진타르타르산염)	제이더블유신약(주)
341	200512168	펜디정(펜디메트라진타르타르산염)	(주)휴온스
342	201003646	펜디진정35mg(펜디메트라진타르타르산염)	(주)서울제약
343	201101167	펜디펜정(펜디메트라진타르타르산염)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344	200410855	펜민정(펜터민염산염)	영일제약(주)
345	200707106	펜슬림정(펜디메트라진타르타르산염)	하나제약(주)
346	200410823	펜키니정(펜터민염산염)	대원제약(주)
347	201506803	펜타덤패취100 μ g/h(펜타닐)	한림제약(주)
348	201305188	펜타덤패취12 μ g/h(펜타닐)	한림제약(주)
349	201305187	펜타덤패취25 μ g/h(펜타닐)	한림제약(주)
350	201305189	펜타덤패취50 μ g/h(펜타닐)	한림제약(주)
351	201201125	펜타듀르패취100 μ g/h(펜타닐)	(주)한국팜비오
352	201201129	펜타듀르패취12 μ g/h(펜타닐)	(주)한국팜비오
353	201201128	펜타듀르패취25 μ g/h(펜타닐)	(주)한국팜비오
354	201201127	펜타듀르패취50 μ g/h(펜타닐)	(주)한국팜비오
355	201201126	펜타듀르패취75 μ g/h(펜타닐)	(주)한국팜비오
356	201500709	펜타릭스패취100 μ g/h(펜타닐)	대원제약(주)
357	201500706	펜타릭스패취12 μ g/h(펜타닐)	대원제약(주)
358	201208524	펜타릭스패취25 μ g/h(펜타닐)	대원제약(주)
359	201503201	펜타릭스패취37.5 μ g/h(펜타닐)	대원제약(주)
360	201500707	펜타릭스패취50 μ g/h(펜타닐)	대원제약(주)
361	199907258	펜타스패취25 μ g/h(펜타닐)	하나제약(주)
362	199907259	펜타스패취50 μ g/h(펜타닐)	하나제약(주)
363	200512155	펜타싌정(펜디메트라진타르타르산염)	명문제약(주)
364	200512147	펜타인정(펜터민염산염)	일동제약(주)
365	200604150	펜타지아정(펜터민염산염)	(주)휴비스트제약
366	201601710	펜타칸설하정 133마이크로그램(펜타닐시트르산염)	(주)한국팜비오
367	201601706	펜타칸설하정 267마이크로그램(펜타닐시트르산염)	(주)한국팜비오
368	201601707	펜타칸설하정 400마이크로그램 (펜타닐시트르산염)	(주)한국팜비오
369	201601708	펜타칸설하정 533마이크로그램(펜타닐시트르산염)	(주)한국팜비오
370	201403354	펜터미세미정(펜터민염산염)	제이더블유신약(주)
371	200611551	펜터미정(펜터민염산염)	제이더블유신약(주)
372	201307940	펜토라박칼정100마이크로그램(펜타닐시트르산염)	(주)한독테바
373	201307941	펜토라박칼정200마이크로그램(펜타닐시트르산염)	(주)한독테바
374	201307942	펜토라박칼정400마이크로그램(펜타닐시트르산염)	(주)한독테바

연번	품목기준코드	제품명	업체명
375	201307943	펜토라박칼정600마이크로그램(펜타닐시트르산염)	(주)한독테바
376	201307775	펜토라박칼정800마이크로그램(펜타닐시트르산염)	(주)한독테바
377	198601870	펜토탈소듐0.5그램주(치오펜탈나트륨)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378	200109981	펜토탈소듐0.5그램주(치오펜탈나트륨)(영문: ThiopentalSodiumInj. 0.5g, PentotalSodiuminj. 0.5g)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379	200308471	펜토탈소듐주사0.25그램(치오펜탈나트륨)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380	200410866	펜트라정(펜디메트라진타르타르산염)	주식회사제뉴원사이언스
381	200410826	펜트민정(펜터민염산염)	(주)바이넥스
382	200604157	펜틴정(펜디메트라진타르타르산염)	대한뉴팜(주)
383	200604167	펜홀드정(펜디메트라진타르타르산염)	(주)제뉴파마
384	198902804	포크랄시럽(포수클로랄)	한림제약(주)
385	201100961	포폴주사(프로포폴)(바이알)	동국제약(주)
386	201100964	포폴주사(프로포폴)(앰플)	동국제약(주)
387	201401685	푸리민정18.75밀리그램(펜터민염산염)	알보젠코리아(주)
388	200308495	푸리민정37.5밀리그램(펜터민염산염)	알보젠코리아(주)
389	200109980	푸리지움10밀리그램(클로바잠)영문:Frisium10mg	(주)한독
390	200109979	푸리지움5밀리그램(클로바잠)	(주)한독
391	201604676	푸링세미정(펜디메트라진타르타르산염)	알보젠코리아(주)
392	199806846	푸링정(펜디메트라진타르타르산염)	알보젠코리아(주)
393	201101296	프레조폴엠시티1%주(프로포폴)(바이알)	프레지나우스카비코리아(주)
394	201101297	프레조폴엠시티1%주(프로포폴)(앰플)	프레지나우스카비코리아(주)
395	201100954	프레조폴엠시티2%주(프로포폴)(바이알)	프레지나우스카비코리아(주)
396	202106887	프레조폴엠시티프리필드주1%(프로포폴)	프레지나우스카비코리아(주)
397	202106888	프레조폴엠시티프리필드주2%(프로포폴)	프레지나우스카비코리아(주)
398	201100955	프로바이브주1%(프로포폴)(PROVIVE1%(propofol))	(주)한국팜비오
399	201406021	프리폴-엠시티주(프로포폴)	대원제약(주)
400	201100957	프리폴-엠시티주(프로포폴)	대원제약(주)
401	201601252	프리폴-엠시티주2%(프로포폴)	대원제약(주)
402	201500098	프리폴-엠시티주2%(프로포폴)	대원제약(주)
403	201309968	피티엠정(펜터민염산염)	대한뉴팜(주)
404	199704613	하나구연산펜타닐주사	하나제약(주)
405	199704614	하나수펜타닐주사50마이크로그램/밀리그램(구연산수펜타닐)	하나제약(주)
406	199806838	하나알펜타닐주사	하나제약(주)
407	200809721	하나염산날부핀주10밀리그램	하나제약(주)
408	200109942	하나염산날부핀주10밀리그램	하나제약(주)
409	199704617	하나염산페치딘주사	하나제약(주)
410	200210688	하나염산페치딘주사25밀리그램	하나제약(주)
411	199704612	하나인산코데인정	하나제약(주)
412	197000212	하나페노바르비탈정	하나제약(주)

연번	품목기준코드	제품명	업체명
413	200704392	하이드로루프 주 10 밀리그램(염산히드로모르폰)	구주제약(주)
414	200410843	하이몰주사20밀리그램(모르핀황산염수화물)	(주)비씨월드제약
415	201202411	하이코돈정5.0밀리그램	(주)비씨월드제약
416	201202412	하이코돈정7.5밀리그램	(주)비씨월드제약
417	200512156	한림모르핀황산염수화물주사	한림제약(주)
418	199604965	한림알프라졸람정0.25밀리그램	한림제약(주)
419	200803405	한림알프라졸람정0.5밀리그램	한림제약(주)
420	200410834	한림펜타닐주사(펜타닐시트르산염)	한림제약(주)
421	200410867	할시온정0.125밀리그램(트리아졸람)	한국화이자제약(주)
422	200410868	할시온정0.25밀리그램(트리아졸람)	한국화이자제약(주)
423	201400403	환인클로나제팜정0.5밀리그램	환인제약(주)
424	201901158	환인클로나제팜정0.5밀리그램(WhanIn Clonazepam Tab. 0.5mg)	환인제약(주)
425	200210686	황물핀정(모르핀황산염수화물)	하나제약(주)
426	199704615	황물핀주사0.5밀리그램/밀리리터(황산모르핀)	하나제약(주)
427	201508080	황물핀주사10mg/mL(모르핀황산염수화물)	하나제약(주)
428	201201173	황물핀주사15mg/mL(모르핀황산염수화물)	하나제약(주)
429	199704616	황물핀주사1밀리그램/밀리리터(모르핀황산염수화물)	하나제약(주)
430	200604152	휴온스케타민염산염주사(수출명: KESIAInj., KWANGMYUNGKESIA.Inj.)	(주)휴온스
431	200713752	휴온스케타민염산염주사50밀리그램/밀리리터(앰플)	(주)휴온스
432	201309969	휴터민세미정(펜터민염산염)	(주)휴온스
433	200410853	휴터민정(펜터민염산염)	(주)휴온스

□ **오남용 우려 의약품 현황(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제2조)**

구분	품목(성분)현황
발기부전 치료제 (9개 성분)	·발기부전치료용 알프로스타딜 함유제제
	·실데나필 함유제제
	·발기부전치료용 염산치목사민 함유제제
	·발기부전치료용 염산아포모르핀 함유제제
	·타다라필 함유제제
	·바데나필 함유제제
	·유데나필 함유제제
	·미로데나필 함유제제
	·아바나필 함유제제
조루치료제 (2개 성분)	·다독세틴 함유제제
	·조루치료용 클로미프라민 함유제제
이노제 (1개 성분)	·푸로세미드 함유제제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 (10개 성분)	난드롤onde카노에이트, 메스테롤론, 메칠테스토스테론, 스타노졸롤, 시피온산테스토스테론, 에난트산테스토스테론, 옥산드롤론, 옥시메톨론, 운데카노산테스토스테론, 플루옥시메스테론 함유제제 중 경구제 및 주사제
전신마취제 (1개 성분)	에토미데이트 함유제제